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·신장식·전종덕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8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민형배·신장식·전종덕

정혜경 • 민병덕 • 윤종오

김종민·조 국·이기헌

김선민 · 조계원 · 서왕진

박은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「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」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2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882호),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86호),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84호) 및 「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9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개인(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)"을 "개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2조(기탁금의 기탁) ① 기탁금	제22조(기탁금의 기탁) ①		
을 기탁하고자 하는 <u>개인(당원</u>	<u>개인</u>		
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			
학교 교원을 포함한다)은 각급			
선거관리위원회(읍•면•동선			
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)에			
기탁하여야 한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